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병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1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
발 의 자: 이병운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민병주, 박상혁, 박영한, 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이민석, 이봉준, 이새날, 이성배, 이숙자, 이종태, 이희원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38명)

1. 제안이유

- 천재지변, 재해, 재난,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작성 및 자문회의 상정 예외 조항 부재
- 도로공사장에 대해 자문회의 결과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 미시행시에만 과태료 등 행정 조치 가능
- 일부 공사장에서 공사편의를 위해 교통소통대책 미이행후 시정명령 후에만 보완하는 사례 발생
-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교통소통대책 미시행 경우는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즉각적인 과태료 처분이 가능토록 업무절차 개선하여 공사시행자에 대한 소통개선대책 준수책임 강화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도로법시행령」 제56조에 따른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함. 이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(안 제4조제5항)
- 나. 시장은 「도로법」 제97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음 (안 제10조제1항)
- 다.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의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「도로법시행령」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의 제목“(시정명령)”을“(시장의 조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은 「도로법」 제97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제11조 중 “시정명령”을 “명령”으로, “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”을 “제9조의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「도로법시행령」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</p>
<p>제10조(시정명령) <u><신설></u></p> <p>(생략)</p>	<p>제10조(시장의 조치) ① 시장은 「도로법」 제97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. 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
<p>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<u>시정명령</u>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 ----- ----- ---- <u>명령</u>----- ----- -- <u>제9조의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</u>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)제5항 및 제10조(시장의 조치)제1항을 신설하고, 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를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